

<체험학습 및 출결석 규정>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봄 햇살이 온 대지를 비추고 학생들의 웃음소리에 절로 행복해 지는 계절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부모님께서 알아두셔야 할 출석규정과 무단결석에 대한 학교의 지침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인정 결석

가. 학교장 허가 현장 체험학습출석인정 범위 및 절차본교규정 제5조에 의거

- ① 현장체험학습의 기간은 개별체험학습의 경우 1회에 1주일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주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겨울방학 전 1주일과 3월 개학 첫 주는 체험학습이 불가)

- ② 현장체험학습의 횟수는 1년에 2회 이내로 하며 기간은 년 14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나. 급식비 환불

- ① 체험학습 기간이 정상적 수업일수에 해당되고, 기간은 3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체험학습 시행일로부터 3일전(체험학습 시작일 포함)까지 체험학습 신청서 결재를 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양식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있음

2. 경조사 참석으로 인한 출석인정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1일
입양	본인	20일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일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일
	부모의 형제자매	1일
비고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입양이외의 경조사 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3. 감염성 질병으로 인한 등교중지 기간 출석 인정

감염성 질병으로 인한 등교중지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감염성질환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으면 담임선생님께 바로 연락을 취한 후 학교에 등교하지 않도록 합니다. 감염위험이 사라져 등교해도 된다는 의사 소견이 나온 뒤 등교해야하며 이때 감염성 질환명과 격리기간이 명시된 진료확인서 또는 의사 소견서를 반드시 학교에 제출해야합니다.

4. 비자신청으로 인한 출석인정 : 비자 신청 관련 서류 사본을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5. 병결 및 무단 결석에 대한 규정 안내

가. 병결

(1) 학생이 감염성 질환 이외의 질병으로 인해 등교할 수 없을 경우 학부모는 담임교사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 경우 학생의 출결은 병결처리 되며 학부모는 학생의 결석계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 결석계 신청양식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음

(2) 결석계는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해야하며 3일 이상 결석시 의사 소견서나 진료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나. 무단결석

(1) 위의 출석인정 결석 병결이 아닌 이유로 학생이 아무런 연락 없이 등교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석 처리 됩니다.

(2)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학생을 등교시키지 않을 경우 출석 독려, 가정 방문을 실시하며 학생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거나 안전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할 수 있습니다.

6. 전학을 가게 되는 경우

가. 주소지 이전으로 인한 전출시 담임교사에게 전출예정 날짜와 이전하는 곳의 간략한 주소 전입예정학교 이름 등을 전화 또는 문자로 반드시 연락주시기 바라며, 소정의 전출 원서를 제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전학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아야합니다.

나. 한국으로 전출시 전입학교에 즉시 전입 수속을 밟지 않으면 학적변동에 지장이 있으니 귀국 후 즉시 전입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2019. 3. 8.

상 해 한 국 학 교